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
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489호
2. 발 의 자 : 황인구 의원
3. 발의일자 : 2020. 5. 21.
4. 회부일자 : 2020. 5. 29.

II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」의 제정으로 그 내용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」 내용을 통합하여 포함시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III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의 폐지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학교체육 진흥법」
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

3. 기 타 : 해당 없음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폐지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89호로 발의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」에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」는 지난 201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5719호로 제정되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그러나 동 조례의 위원회 구성·운영 및 학교체육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¹⁾」이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는 입법의 통일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 -6995, 2020.5.29.).

1) 의안번호 제1490호(2020.5.21.)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